

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9. 2.

임실군의회 의장

1. 개정이유

- 경로당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명확화,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『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』를 『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』로 변경하여 신규등록 경로당 설치 근거 마련
- 나. 경로당 지원대상을 구체화함(안 제3조)
- 다.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
- 라.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, 정산보고, 환수등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제고(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노인복지법 제47조(비용의 보조)
- 나. 예산조치 : 2015년 예산 2,312백만원 반영
(본예산 2,042백만원, 추경예산 270백만원)
- 다. 협의 등
 - 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- 라. 기 타
 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2) 입법예고('15. 6. 9. ~ '15. 6. 29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- 4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”를 “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”를 “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”로, “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”을 “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마을회관”이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, 친목도모,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(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 포함)과 마을회관(이하 “경로당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 “(경로당 지원)”을 “(경로당 등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비(단 신축 시 부지구입비는 제외)

2. 경로당과 마을회관 시설 개·보수, 증·개축 및 물품·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
3. 경로당 공공요금, 냉·난방비, 보험료 등 운영비
4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
5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
6.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
7.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
8.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, 이용자 성별, 시설규모,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경로당”을 “경로당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경로당 지원계획 수립)”을“(경로당등 지원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로당”을 “경로당 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경로당”을 “경로당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

제7조 중 “경로당”을 “경로당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수익활동 지원)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

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“(보조금의 반환)”을“(용도 외 사용금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로당 등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.

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시행규칙)”을“(정산보고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환수 등) ①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, 사용잔액 발생 시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로당 등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4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<u>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<u>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| <p><u>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<u>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<u>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-----</u>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u>뜻은</u>----- 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마을회관”이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, 친목도모,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(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 포함)과 마을회관(이하 “경로당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|

제4조(경로당 지원)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경로당 시설 운영비

2.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

3.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
4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
5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(경로당 등 지원) ① -----

-----.

1.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비
(단 신축 시 부지구입비는 제외)
2. 경로당과 마을회관 시설 개·보수, 증·개축 및 물품·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
3. 경로당 공공요금, 냉·난방비, 보험료 등 운영비
4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
5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
6.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
7.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
8.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

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「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운영실태 조사)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경로당 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경로당 시설 개·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

2. 경로당 시설 운영비 지원계획

3. (생략)

제7조(프로그램 개발 등)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건

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, 이용자 성별, 시설규모,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실태 조사) ① -----
-----경로당 등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)
-----경로당 등은-----

-----.

1. 경로당 등-----

2.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

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프로그램 개발 등) -----
-----경로당 등-----

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익활동 지원)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조금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제8조(수익활동 지원) 군수는 법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경로당 등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10조(정산보고 등) ①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1조(환수 등) ①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, 사용잔액 발생 시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로당 등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노인복지법 제47조(비용의보조)
-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증가로 비용발생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대상 확대

나. 추계 결과

- 2,312백만원/년

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:백만원)

| 년도 | 경로당수 | 지원내용 | 총예산액 | 증감액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2015 | 339 | 경로당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| 2,312 | 270 |

3. 자원조달방안

- 2015년도 예산 2,312백만원 예산편성(본예산 2,042백만원,
추경예산 270백만원)

4. 작성자 :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

붙임 : 연도별 비용추계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1차년도 (2015년) | 2차년도 (2016) | 3차년도 (2017) | 4차년도 (2018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세 출 | | 2,312 | 2,453 | 2,453 | 2,453 | 9,671 |
| | | 2,312 | 2,453 | 2,453 | 2,453 | 9,671 |
| 재원 조달 | | | | | |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2,312 | 2,453 | 2,453 | 2,453 | 9,671 |
| | 보조금(국도 비) | 640 | 672 | 672 | 672 | 2,656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
| | 군비 | 1,672 | 1,781 | 1,781 | 1,781 | 7,015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| | | | |
| | 지방세 | | | | |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
| | 군비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
| 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| | | | |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 노인복지법 제47조(비용의 보조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